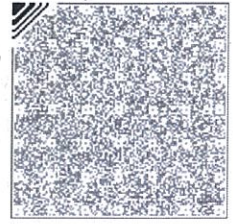




환경부

환 경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추석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요청

1.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의 휴진 또는 휴무 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.
3.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(14일)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배출자 및 처리업체는 연휴 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자는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*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(관련근거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[별표 5] 제5호다목

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천재지변, 휴업, 시설의 보수,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은 추석연휴기간 휴진 등에 따른 보관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